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우)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층 [http://www.kma.org] / 전화(02)6350-****/ 전송(02)790-8911
보험국 국장 김기성[6574] 보험연구팀장 김선우[6576] 팀원 윤영섭[6580]/ E-mail : kmarbrvs@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1-1402호
시행일자 2023. 5. 1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7호 (2023.05.0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신청하여야 함)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별표1 제911호 변경
- 911.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첨부
1) 신의료기술의_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23-78호)_일부개정안.
2) 신의료기술의_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전문.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 시도의사회장, 각 전문학회장, 각과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